2026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1. 소집 통지일 : 2026. 10. 02 (금)

2. 개 최 일 시 : 2026. 10. 15 (목) 17 : 00

3. 개 최 장 소 : 다비다의집 5층 소강당

4. 총 임 원 수 : 이사 11명, 감사 2명

5. 참석 임원수 : 이사 10명
윤 대표이사, 박 이사, 류 이사, 임 이사, 박 이사,
고 이사, 노 이사, 이 -이사, 이 이사, 양 이사

6. 의 안 :
1. 2026년도 법인 산하시설 세입 · 세출 추경예산 심의
2. 대전원명학교 교원 제청에 대한 심의

의사경과 요령 및 의안의 결의 결과

의장 윤 :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진 날씨에 임원여러분의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에 감사드리며, 법인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님들께서 출석하였으므로 2026년도 제5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2026년도 법인 산하시설 세입·세출 추경예산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원본대조필

온달의집 제3차 추경, 새둥지 제3차 추경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인 산하시설 사무국장(실무자)은 2026년도 산하시설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인 산하시설 사무국장(실무자)이 단상에 나와 미리 배포해 드린 2026년도 산하시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들을 참고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온달의집 2026년도 제3차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89,912천원 증액한 5,819,377천원으로, 세입 보조금수입 289,686천원 증액, 잡수입 226천원 증액하였고, 세출은 사무비 292,786천원 증액, 사업비 3,100천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226천원 증액하여 세입·세출 예산 합계 금액이 각각 5,819,37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둥지 2026년도 제3차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02,203천원 증액한 2,053,480천원으로 세입 중 보조금수입 282,213천원 증액, 전입금 20,000천원 증액, 잡수입 10천원 감액하였고, 세출 중 사무비 258,234천원 증액, 재산조성비 19,920천원 증액, 사업비 24,049천원 증액하여 세입·세출 예산 합계 금액이 각각 2,053,48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서 일동 예산서를 참고하여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다)

의장 윤 : 보고받으신 2026년도 법인 산하시설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사 양 :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사 고 , 이사 박 : 재청합니다.

의장 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이의 없다 답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1호 의안) '2026년도 법인 산하시설 세입·세출 추경예산 심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어서**(제2호 의안) '대전원명학교 교원 제청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법인사무국 과장은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윤 : 지난 9월 9일 대전원명학교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원이 수업을 방해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제지하는

제청을 결의하였고, 법인에 이를 제청하였습니다.

이사 박　　: 처분의 근거 조항과 절차 단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장 윤　　: 현재는 수사 단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비위행위를 사유로 하는 제4호를 적용한 것입니다. 구체적 비위행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5호(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교원의 가 필요하다고 판단, 금번 이사회 의결 내용에 따라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사 류　　: 교원지위법상 . 이 사안이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과장 윤　　: 단순한 신고 접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 임　　: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단계이지만, 조건으로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또한, 대전원명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는 2027. 1.

11.까지 를 제청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및 최종 처분 결정 시까지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사 박 : 임 이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사 박 : 의 효력발생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 윤 :
처분입니다. 효력은 해당 교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며, 이사회 의결일은 효력발생일이 아닙니다.

의장 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원의 에 대한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이의 없다 답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2호 의안) '대전원명학교 교원 제청에 대한 심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 동의 후 폐회 선언하다. (폐회시간은 17:30)

위 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2026년 10월 15일

사회복지법인 천 성 원

대 표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감 사 (인)

감 사 (인)